

VI. 主要 政策 이슈 解説

- **통상산업부, 中小企業構造改善 및 經營安定支援方案 마련, 3월 시행(2. 3)**
 - 30대그룹소속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으로 주는 상업어음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제한
 - 관련 기업 도산 등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시 긴급 경영 안정 지원
- **건설교통부, 96年度 物流 改善 施行 計劃 확정 발표(2. 5)**
 - 정부는 올해부터 5년동안 250만개의 표준 팔레트를 보급
 - 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물류 표준마크제 도입
- **정보통신부, 超高速網 288個 事業者 7월 선정(2. 8)**
 - 특정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일반통신사업과 케이블TV사업 참여 허용
 - 초고속망 참여업체는 대주주 지분이 1/3 이하로 제한
- **재정경제원, 5월부터 商業借款 導入 要件 완화(2. 9)**
 - 30대그룹 이외의 첨단 제품 생산 일반대기업도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
 - 비계열대기업에 한해 우선 허용하고, 30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허용
- **재정경제원, 3월부터 貸出指導比率 폐지(2. 10)**
 -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30~70%를 의무적으로 제조업에 대출 → 정보통신, 유통, 관광, 서비스 등 우량 기업들도 필요한만큼 대출 가능
- **건설교통부, 7월부터 主要 都市의 工場地帶 再開發 추진(2. 11)**
 - 소규모 노후 공장 밀집 지역을 도시형 공장 지대로 재정비
 - 재개발지역내에는 住工 복합건물 가능하나, 低공해·도시형 업종에 한해 허용
- **재정경제원, 上場法人의 株式을 取得하는 同一人 범위 확대(2. 12)**
 - 상장법인 주식의 5% 이상 소유할 경우 신고 대상 동일인 범위 확대(대기업 계열사 →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)
- **중앙안전대책위원회, 建設 競争力·不實防止 종합대책 마련(2. 13)**
 - 97년부터 은행, 보증회사 등이 건설공사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보증제 도입
 - 대형공사는 한 회사가 위탁받아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